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안현선

전화 033-660-4341

보도자료

2024. 1. 26.(금)

제목

**유령법인 3개 · 대포통장 59개의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고
약 10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자금세탁책 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춘천지검 강릉지청(지청장 문영권)은 유령법인 3개와 대포통장 59개를 개설하여 3년 동안 약 1만 회에 걸쳐 **100억 원을 인출**하여 전달한 **자금세탁책**을 어제(1. 25.) 사기방조,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등의 혐의로 직접 **구속하여 기소**하였습니다.
-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피해액 120만 원의 사기방조 사건을 검토하던 중 계좌에 입금된 수억 원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는 **특이거래**를 발견하였고,
 - 범행과 관련된 계좌 **155개**를 특정하여 **3년간의 거래내역**을 분석하고, 등기소 압수수색, 다른 검찰청 기록 검토 등 **면밀한 보완수사**를 진행하였습니다.
- 수사결과, 피고인이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하고 위 법인들 명의의 대포통장 및 피고인의 가족, 지인 명의 **계좌 총 59개**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,
 - 나아가 피고인이 제공한 59개의 대포통장 계좌로 약 **106억 원**을 입금받아 이를 수십 개의 계좌로 순차 이체한 다음 약 1만 회에 걸쳐 **현금으로 약 100억 원**을 인출하여 **세탁**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구속하였습니다.
-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, **‘범죄를 위한 범죄’인 자금세탁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**하겠습니다.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- (피고인) A(35세, 무직)
- (경찰 송치 범죄사실 요지)
 - '21. 6.경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(접근매체) 1개를 양도하여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
 - '22. 4.~9.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 및 제3자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, 사기 피해금원 합계 약 7,000만 원을 출금하여 [사기방조]
 - ※ '23. 2. 피해액 120만 원의 사기방조 사건 1건을 최초로 송치받았고, 이후 '23. 5. 까지 추가로 5건을 송치받아, 총 6건의 피해금원 합계가 약 7,000만원임
- (검찰 추가 입건 범죄사실 요지)
 - '20. 1.~'22. 9. 자금세탁, 탈세 등을 위해 피고인 및 제3자 명의 대포통장 계좌 59개를 개설한 후 계좌정보 등을 제공하여 약 106억 원을 입금받고, 약 1만 회에 걸쳐 입금된 금원 중 약 10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[금융실명법위반방조]
 - '21. 5.경 출자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법인 (유한회사) 3개를 설립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, 비치하게 하여 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]
 - '21. 6.경 위 유령법인 3개 명의의 통장 3개를 양도하여 [전자금융거래법위반]

II

수사 경과

- '23. 2. ~ 5. 경찰, 사기방조 등 사건 송치
- '23. 5. ~ 12. 검찰, 계좌추적* 및 등기소 압수수색

* 피고인이 제공한 위 대포통장 계좌 59개와 그 연결계좌 96개 등 총 155개 계좌의 3년 간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였고, 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유령법인 설립 관련 서류 및 출자금 영수증을 확보하였음

- '24. 1. 12. 검찰,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(1. 16. 발부)
- '24. 1. 25. 검찰, 피고인 A 구속기소

III

수사 결과

- (수사 착수 경위)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피해금 120만 원의 사기방조 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고인 명의 계좌 1개에 한달 간 수 억원이 입금되고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는 특이한 거래를 확인하여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.
- (차명계좌 사용 확인)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다른 검찰청 사건기록과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자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기록(5건)을 대출받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재조사한 결과,
 -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을 통하여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,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- (법인계좌 사용 확인) 피고인은 유한회사의 경우 '출자금 영수증'만 있어도 설립등기와 법인명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, 피고인과 가족, 지인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, 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.
 - * 유한회사와 달리 주식회사는 상법 제318조에 따른 '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증명서'가 필요하여 설립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움
- (범행 수법)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설한 차명계좌와 법인계좌 59개를 자금세탁에 제공·사용하여 3년 동안 약 106억 원을 입금받고, 수십 개의 계좌로 순차 이체하다가 종국적으로 약 10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구속하였습니다.

IV

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, 자금세탁 및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및 엄정한 처벌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및 검은 돈 세탁을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다.